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9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박상혁·박희승·김병기

유동수 • 정준호 • 노종면

정진욱 · 김현정 · 김한규

조승래 • 민병덕 • 이연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

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법률 제 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통보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 지 아니한 자

별표 1 제12호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별표 2 제10호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10의2.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출받지 못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8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②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u>한다</u> . <후단 신설>	하고,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보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
	반사실의 대상 및 범위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통
	보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
	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
	터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제
	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u>한다.</u>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 략) ③ ~ ⑤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결 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 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